

#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

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,

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지방보조금에 관한 근거법률인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기준보조율을 조례상 범위와 달리 정하려 할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전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, 지방보조사업의 내역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